

공유재산 교환 계약서

교환재산의 표시

시유재산: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-581(잡종지, 226㎡)

구유재산: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 47-1(홍익동 147-22, 대지 166.7㎡, 연면적 453.7㎡)

위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교환가액) “시”와 “구”가 상호 교환할 재산의 가액 및 차액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”의 재산가액: _____ 원
2. “구”의 재산가액: _____ 원
3. 차액: _____ 원

제2조(교환방법 및 교환차액 지급) “시”와 “구”는 교환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하되, 차액 _____ 원은 “시”가 지정하는 소관회계 계정에 “구”가 납입하여야 한다.

제3조(소유권 이전) ① “시”와 “구”의 위 표시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“구”가 “시”에게 교환차액의 완납 후 지체없이 상호 이행한다.

② “시”와 “구”는 각각 취득할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으며,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.

③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“시”와 “구”는 서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산의 명도) “시”와 “구”는 위 표시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와 동시에 각각 명도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권말소 등) “구”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“구”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가.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

나. 각종 공과금의 변제

제5조(계약조항의 변경)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“시”와 “구”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시”와 “구”가 기명날인하고,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

2014년 10월 일

“서울특별시”

위 대표자 서울특별시시장 박 원 순 (인)

“성 동 구”

위 대표자 성동구청장 정 원 오 (인)